

##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아래의 조례를 제정 및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5월 22일

## 양산시의회의장

### 1. 자치법규명

연 번	조 례 명	발의자
1	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최선호 의원 대표발의
2	양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	김석규 의원
3	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	김혜림 의원
4	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	최복춘 의원 대표발의
5	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	정성훈 의원
6	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	공유신 의원 대표발의
7	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성용근 의원
8	양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	최복춘 의원 대표발의
9	양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	강태영 의원
10	양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	정숙남 의원 대표발의
11	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	송은영 의원 대표발의
12	양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	김지원 의원
13	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최복춘 의원 대표발의
14	양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	송은영 의원 대표발의
15	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	최순희 의원
16	양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	김지원 의원
17	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김지원 의원
18	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	김지원 의원

### 2. 개정이유 : 붙임 참고 바람

3. 주요내용 : 붙임 참고 바람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편번호 : 50624

※ 주소 : 양산시 중앙로 39 (의회사무국)

※ 전화 : 392-8622, 팩스 : 392-8619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